NEW YORK STATE OF OPPORTUNITY. Department of Health

ANDREW M. CUOMO
주지사

HOWARD A. ZUCKER 의학박사 겸 법학박사
커미셔너

LISA J. PINO, 학사 겸 법학박사
행정부 부커미셔너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대한 지침

2021년 3월 17일 발효

목적 및 배경:

뉴욕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코로나19 백신의 양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주정부가 수령하는 백신의 양은 연방 정부가 뉴욕에 할당한 양에 따라 결정됩니다. 뉴욕주 보건부(New York State Department of Health, NYSDOH)는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등록한 제공자 및 단체에 대한 주정부의 할당을 결정합니다.

3월 17일부터 약국 외의 등록 제공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개인에게 계속해서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며, 연방 지침에 따라 P-12 학교 교수진 및 직원, 보육 종사자를 우선해야 하지만, 이제는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이 있는 개인에게 예방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공자는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에게 예방 접종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여기에는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을 가진 사람들과, 만 60세 이상의 개인이 포함됩니다.

3월 17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 및 공공 근로자, 비영리 근로자, 필수 대면 건물 서비스 근로자 및 필수 건물 서비스 제공 업체는 백신 접종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뉴욕은 현재 자격이 있는 우선순위 그룹에서 사회 공평성과 공정한 분배를 의무화하여 적격성 그룹 및 지역별로 공정한 치료와 균형 있는 할당을 보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위치하고 연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제공하는 제공자를 포함하여 뉴욕주에 있는 모든 백신 제공자는 뉴욕주 백신 트랙커(NYS Vaccine Tracker)를 포함하여 백신 우선순위에 관한 뉴욕주 보건부 지침 및 기타 관련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접종 대상 개인:

부록 A에는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는 집단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백신 제공자의 책임:

- 코로나19 백신은 뉴욕주 보건부가 정한 접종 대상자 계획에 따라 제공되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 지침에 적격한 것으로 나열된 이들 외의 기타 집단 또는 그룹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백신을 받는 모든 시설, 단체 및 진료소는 뉴욕의 "미사용 시 소실(Use it or Lose it)" 정책 및 연장된 행정명령 202.88호에 따라 모든 접종분을 신속하게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령 후 7일 이내에

백신을 투여하지 않을 경우 남은 접종분은 제거될 수 있으며, 향후 백신 용량을 할당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수령한 주 내에 적격한 대상에 수령한 모든 선량을 투여할 수 없는 제공자 또는 조직은 연장된 행정명령 202.88호에 따라 CovidVaccineNotUsed@health.ny.gov로 늦어도 수령 5일 차까지 통지해야 합니다.
- 백신은 뉴욕주 보건부의 사전 승인 및 동의 없이 다른 시설, 제공자, 진료소 또는 부서에 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백신 재배포가 필요한 시설은 작성한 재배포 양식을 COVIDVaccineRedistribution@health.ny.gov에 제출해야 하며 뉴욕주 보건부의 승인 없이 재배포해서는 안 됩니다.
- 제공자는 뉴욕주 보건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한된 기간에 백신 접종 진료소를 열 목적으로 백신을 다른 장소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자가 뉴욕주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New York State Immunization Information System, NYSIIS)의 자체 재고에 대해 투여한 선량과 보고하는 선량을 관리하고 있다면, 사용하지 않은 백신은 그날 진료소가 종료될 때 원래 위치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해당 제공자는 운송 및 접종 기간 동안 백신의 보유 및 통제를 유지해야 합니다.
- 백신을 접종하는 사람들은 접종분을 이용할 수 있는 즉시 백신을 우선적으로 투여받아야 합니다.
- 모든 제공자는 짧은 통지로 백신 접종에 대한 공석 예약을 통보받을 수 있는 적격한 "대기" 개인들의 일일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사람보다 투여량이 더 많이 있음을 인지하는 즉시 "대기"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전화하거나, 허용 가능한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적격 피접종자를 시설 또는 클리닉에 내원시키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대기 목록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접종분에 적격한 개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지침은 3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 제공자는 1시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주사기를 미리 충전하면 안 됩니다. 화이자-바이오엔텍(Pfizer-BioNTech) 및 모더나(Moderna), 얀센(Janssen(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의 사전 충전된 주사기는 충전 후 6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얀센(Janssen) 백신은 충전 후 2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과량의 사전 충전은 진료소가 일찍 마감해야 하거나 과도한 수의 피접종자가 의료 스크리닝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예약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 폐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의료인을 위한 일과 또는 진료소 종료 이후 잔여 코로나19 백신 용량 사용 지침(Guidance on Use of COVID-19 Vaccine Doses Remaining at End of Day or Clinic for Providers Participating in the New York State COVID-19 Vaccination 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 모든 시설 또는 진료소는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추적해야 하며 요청 시 보건 응급 대응 데이터 시스템(Health Emergency Response Data System, HERDS) 여론조사를 통하거나 일간 뉴욕주 백신 트랙커(NYS Vaccine Tracker)의 일환으로 뉴욕주 보건부에 접종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백신을 수령하는 각 서비스 제공자:

- **백신 접종을 하는 각 개인에 대해 다음 사항을 반드시 보장해야 합니다.**
  - 개인이 작성한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양식(NYS Vaccine Form) 및 증거에 대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 개인이 자격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제공자는 모든 관련 정보를 뉴욕주 백신 트랙커 및 뉴욕주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시 면역 등록부(Citywide Immunization Registry, CIR)에 해당 사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 수령할 백신의 양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 접종 대상 집단에게 신속하게 배포하여 수령 일주일 내에 모든 백신 접종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 백신을 접종을 실시하는 사람 및 접종 대상 직원의 백신 접종을 우선해야 합니다(새로운 제공자인 경우).
- 접종되는 모든 백신은 접종 후 24시간 이내에 뉴욕주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 또는 뉴욕시에서는 시 면역 등록부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 백신 접종자는 또한 **반드시 매 월요일 그리고 목요일에 모든 예방 접종한 이들에 대한 추가 정보를** 코로나19 백신 트랙커(COVID-19 Vaccine Tracker)를 사용하여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19 백신 접종:

얀센(존슨 앤 존슨) 백신은 단 1 회 접종이 필요한 반면,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접종 이후 두 번째 접종을 21일(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또는 28일(모더나 백신) 후에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모든 제공자는 **첫 번째 접종을 실시할 때** 피접종자의 두 번째 접종 일정을 **반드시** 예약해야 합니다. 뉴욕주 보건부가 상황을 참작하여 다른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 한,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들은 두 번째 접종을 받기 위해 동일한 장소로 내원해야 합니다. 개인은 동일한 백신을 2회 접종받아야 합니다(예: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 2회 또는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해야 합니다). 이들은 상호 호환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용량 접종에 관한 추가 정보는 코로나19 백신의 두 번째 접종에 대한 지침(Guidance for Administration of the Second Dose of COVID-19 Vaccine)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접종을 위해 첫 번째 백신 접종분을 비축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할당 투여량은 필요한 간격으로 두 번째 접종을 위해 자동적으로 시간에 맞춰 시설로 배송됩니다. **두 번째 배송분에 포함된 백신은 두 번째 접종용으로 비축해야 합니다.** 시설에 두 번째 접종분 배송의 시점과 수량이 통보되어 재고의 첫 번째 접종분과 분리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질병 통제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CDC)의 백신 재고 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https://www.cdc.gov/vaccines/covid-19/vaccine-inventory-management.html). 해당 지침에 따라 의료 서비스 제공자는 매주 모든 예약 누락자와 더불어, 1차 접종 42일 후에도 2차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접종분에서 남은 백신을 재사용한 경우 등을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예정된 투여를 위해 42일 기간을 넘지 않는 냉동된 두 번째 투여량은 첫 번째 접종분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접종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두 번째 접종분은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거나 사용 날짜가 지난 분량이며, 제공자는 두 번째 투여량 지침에 설명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현재 42일 기간을 벗어나는 냉동된 두 번째 접종분은 즉시 첫 번째 접종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주정부는 만 66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접종분은 뉴욕주 백신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투여될 수 있습니다. 42일 기한을 놓친 후 개인이 두 번째 접종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해당 두 번째 선량을 접종받게 될 것입니다. 질병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CDC) 지침에 따라 순차를 재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42일 기간 이후에 지연된 두 번째 접종분을 투여하기에 충분하지 못한 백신을 가지고 있는 제공자는 두 번째 선량 대기자 목록을 유지하는 리드 허브 병원(Lead Hub Hospital)과 협력해야 합니다.

화이자-바이오엔텍 및 모더나의 추가 접종분:

화이자-바이오엔텍과 모더나의 바이알에는 최소 추가 백신 접종 1회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 된 바늘과 주사기의 종류에 따라 백신이 유리 병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실시자는 주사기로 쉽게

용량 요건에 맞춰 뽑아낼 수 있는 추가 백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바이알에서 나온 여분의 백신을 합하여 추가 접종분을 생성할 수 **없습니다** . 백신 접종에는 방부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특히 중요합니다. 제공된 추가 백신을 포함하여 뉴욕주 예방 접종 정보 시스템/시 면역 등록부에 제공된 모든 백신을 입력하십시오. 그러나 추가 접종분을 예상하여 재고를 수정하지 마십시오. 추가 정보는 추가 접종분에 대한 화이자-바이오엔텍 지침 및 모더나 지침을 참고하십시오 얀센(존슨 앤 존슨) 바이알에는 추가 접종분이 포함되는 사례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잔여 코로나19 백신 접종분:

모든 백신 제공자는 백신의 모든 접종분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낭비를 피하기 위한 적절한 계획에는 새로운 바이알에서 첫 번째 접종분을 뽑기 전에 정확한 수의 적격한 피접종자가 접종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모든 제공자는 짧은 통지로 백신 접종을 통보받을 수 있는 적격한 "대기" 개인들의 일일 목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공자가 백신 접종을 받을 사람보다 투여량이 더 많이 있음을 인지하는 즉시 "대기"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전화하거나, 허용 가능한 사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 적격 피접종자를 시설 또는 클리닉에 내원시키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천후, 취소 또는 바이알 내 추가 접종분으로 인해 영업 종료 또는 백신 진료소의 종료 시점에 남은 백신 접종분이 있고 접종분이 만료되기 전에 적격한 개인이 내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기" 목록에는 첫 번째 및 두 번째 접종분에 적격한 개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적격한 개인이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의하는 성인에게 예방 접종을 실시하십시오. 제공자는 이 권한에 따라 투여되는 백신을 뉴욕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황에서 이미 접종 대상자 집단, 약국 부서의 대중을 대면하는 모든 사람 및 "대기" 목록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한 약사는 이후 백신 접종분이 만료되도록 하기보다는 기타 접종 대상자 또는 동의한 성인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이 예외는 백신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적용되며 뉴욕주 보건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이 더 많은 집단에 개방됨에 따라, 이 예외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이 예외가 사용되는 경우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에게 추가된 행정명령 202.86호에 따라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양식을 작성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접종 후 24시간 내에 뉴욕주 예방 접종 시스템/시 면역 등록부에 투여한 백신 접종분을 접종 후 24시간 이내에 기록하십시오.
- 다른 그룹에 사용되는 백신의 양이 명확하게 문서화되도록 별도의 추적 시트를 유지하십시오.
- 접종 시 두 번째 접종 일정을 예약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제공자는 일체의 백신을 폐기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백신을 접종받도록 연락할 수 있는지 리드 허브 병원과 현지 보건부에 연락하여 확인하십시오.

필수 백신 양식: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는 모든 개인은 첫 번째 접종을 위해 **반드시** 뉴욕주 코로나19 백신 양식을 작성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행정명령 202.86호의 연장에 따라 진료소, 제공자, 단체는 백신 접종 시 이러한 요건의 준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 또는 자격 증명:

백신 접종을 받는 개인은 **반드시** 자격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이 근무 또는 고용 상태로 인하여 접종 대상자가 된 경우, 거주지와 관계없이 해당 개인이 뉴욕주 **내**에서 근무하거나 고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지만 다른

주에 고용되거나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무 또는 고용이 발생하는 장소와 관계없이 그러한 개인은 뉴욕에서의 거주 증명과 근로 또는 고용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근무 또는 고용 증명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직원 ID 카드 또는 배지,
- 고용주 또는 소속 단체의 서신,
- 급여 명세서(특정 우선순위 상태에 따름), 또는
-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 증명을 표시(예: 우버(Uber), 리프트(Lyft), 도어대시(DoorDash) 등).

나이로 인하여 접종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뉴욕주 연령 증빙 서류 및 주거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뉴욕 거주자임을 증명하려면 개인이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 중 하나: 주 또는 정부 발급 ID, 영사관 ID(뉴욕 주소가 표시된 경우), 집주인의 진술서, 현재 임대료 영수증, 주택담보대출 기록, 또는
- 다음 중 두 가지: 타인의 진술서, 현재 우편 주소, 학교 기록.
- 연령의 경우 그러한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증 또는 비운전자 ID
    - 주 또는 지방정부가 발행한 출생 증명서
    - 영사관 ID
    - 현재 미국 여권 또는 유효한 외국 여권
    - 영주권 카드
    - 귀화 또는 시민권 증명서
    - 생년월일이 있는 생명 보험 정책
    - 생년월일이 있는 혼인 증명서.

또는 고용주나 단체가 백신 접종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목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직업, 나이 또는 우선순위 상태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주거지 증빙 서류 및 근무 기록이 없는 사람에게는 백신 접종을 하지 마십시오. 행정명령 202.86호는 자격을 인증하지 않았거나 제공자가 달리 해당 개인이 우선순위 그룹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개인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모든 제공자에게 금전적 처벌을 부과합니다.

특정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을 가진 개인의 경우, 주 운영 대규모 백신 접종소에서 다음 중 한가지 증명을 통해 적격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의사의 서신, 또는
- 동반 질환을 입증하는 의료 정보 또는
- 서명된 인증서

지역 보건부는 상술한 증빙의 어떤 형태 또는 조합이 이 인구에 대한 관할 구역에서 필요한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공자는 동반 질환의 증명을 위한 LHD 정책을 알고 있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받는 개인에게 그러한 정책과 일치하는 증빙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건부는 모든 제공자가 관할구역의 증명요건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기 지침에 따르는지 감사할 것입니다.

필수 뉴욕주 보건부 코로나19 백신 양식에는 백신 접종 자격에 대한 자가 증명 및 뉴욕 주거 증빙, 근로 증빙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백신 접종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백신 안전성:

백신 접종 후 모니터링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프로그램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백신 접종을 받은 모든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 백신 접종 후 며칠 동안 증상을 기록할 수 있는 스마트폰 기반 애플리케이션 브이-세이프(V-Safe)를 사용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브이-세이프는 또한 의학적으로 심각한 부작용을 보고한 사람에 대하여 2차 접종분 알림을 제공하고 전화로 후속 조치를 안내합니다. 브이-세이프 정보 시트 등 브이-세이프에 대한 정보는 http://www.cdc.gov/vsaf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시트를 인쇄하여 백신 접종을 받은 각 사람에게 배부하십시오. info@VAERS.org 또는 1-800-822-7967로 전화하여 백신 이상사례 보고 시스템(Vaccine Adverse Events Reporting System, VAERS)에 백신 접종 후 발생한 모든 부작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공정성:

자격 기준에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는 직책, 위치 또는 기타 상태에 관계없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의 최전선 근로자에는 의사, 등록 간호사, 면허가 있는 실무 간호사, 공인 간호사 보조, 개인 관리 보조, 환경 종사자, 병동 일반 직원, 조리 근무자, 기타 같은 층 및 병동, 진료소 또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코로나19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동시에 백신 접종을 받을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모든 지역사회 및 시설의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회적 취약성 지수가 높은 지역의 사람들은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하며 백신 접종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계획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우선순위를 모든 직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본 지침은 발행 날짜부터 추후 개정되거나 뉴욕주 보건부가 추가 지침을 발행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문의 사항은 뉴욕 보건부 예방 접종국(Bureau of Immunization) COVID19vaccine@health.ny.gov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뉴욕주 백신 접종 프로그램 지침
부록 A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 그룹

<u>2021년 3월 17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접종 대상 우선순위 그룹</u>

- **대중과 접촉하는 공무원 및 공공 근로자,**
- **도움이 필요한 뉴욕 주민에게 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영리 근로자,**
- **필수 대면 대민업무 건물 서비스 근로자 및 필수 건물 서비스 제공자.**

아래의 동반 질환이나 기저 질환 중 하나를 앓고 있는 개인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1] 이 목록은 추가적인 과학적 증거가 발표되고 뉴욕주에서 추가적인 주별 데이터를 획득하고 분석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로 인한 중등 또는 중증 질병 및 사망 위험이 증가하여 다음과 같은 질환을 가진 만 16세 이상의 성인이 자격 대상이 됩니다.

- 암(현재 또는 완화 상태의 경우, 9/11 관련 암 포함)
- 만성 신장 질환
- 만성 폐쇄성 폐질환(chronic obstructive pulmonary disease, COPD), 천식(중등도에서 중증), 폐섬유증, 낭포성 섬유증 및 9/11 관련 폐질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다운 증후군을 포함한 지적 및 발달 장애
- 심부전, 관상 동맥 질환, 심장근육병증 또는 고혈압(정상치보다 높은 혈압) 등 심장 관련 질환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고형장기 이식, 혈액이나 골수 이식, 면역 결핍,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다른 면역 약화의 사용,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한 면역 손상(면역 체계 약화)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 중증 비만(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 40kg/m2) 또는 비만(BMI 30kg/m2 이상 40kg/m2 미만)
- 임신
- 겸상적혈구 질환 또는 지중해빈혈
- 1형 또는 2형 당뇨병
- 뇌혈관질환(혈관과 뇌로의 혈액 공급에 영향을 미침)
-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경학적 질환, 그리고
- 간 질환.

<u>적격을 계속 유지하는 우선순위 그룹:</u>

- 의료 종사자
    -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정신과 센터를 포함한 고위험군 병원 및 연방 공인 센터(Federally Qualified Health Center, FQHC) 직원
    - 장기 돌봄 시설(Long-term care facility, LTCF)을 비롯해 발달 장애인 사무국, 정신보건국(Office of Mental Health, OMH),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 and Family Services, OCFS), 및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 감독을 받는 밀집 시설의 거주자/환자, 발달 장애인 사무국, 정신보건국,

[1] 약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만 백신을 접종합니다.

아동가족서비스청,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의 감독 또는 자금 지원을 받는 밀집 거주 환경의 거주자와 접촉하는 의료 및 기타 고위험군 필수 직원.
    - 긴급 의료 서비스 직원
    - 코로나19 백신 접종 직원
    - 외래 진료/이동 진료소에서 직접 대면 환자 진료를 제공하는 모든 연령의 최전선, 고위험군 의료 종사자 또는 기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예: 접수 직원).
        - 여기에는 개인 의료 진료소에 종사하는 개인, 병원 소속 의료 진료소, 공중 보건 클리닉, 모든 유형의 특수 의료 진료소, 모든 유형의 치과 진료소, 투석 근로자, 진단 및 치료 센터, 직업 치료사, 물리 치료사, 언어 치료사, 채혈사 및 혈액 관련 근로자, 행동 건강 근로자, 조산사 및 산파, 학생 보건 근로자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검사, 코로나19 검사 표본 처리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하여 환자와 직접 대면 접촉하는 모든 고위험군 및 최전선 공중 보건 종사자
- 공인 긴급상황 대처자, 응급 의료 전문가, 고급 응급 의료 기술자, 응급 의료 기술자, 응급 진료, 긴급의료원, 앰뷸런스 응급 차량 운전자 또는 비공인 앰뷸런스 보조 등을 포함한 공인 뉴욕주 응급 의료 서비스(emergency Medical Service, EMS) 제공자
- 카운티 검시관 또는 법의관, 또는 감염성 물질 또는 체액에 노출된 고용주 또는 계약자.
- 뉴욕주에 등록되었거나 면허를 받은 허가된 장례 회사의 장의사, 소유주, 운영자, 직원, 계약자, 인증 장례 진행 책임자 중 감염성 물질이나 체액에 노출된 자
- 양로원 직원 및 보조자, 호스피스 직원, 개인 돌봄 보조사, 고객 대상 개인 돌봄 근로자
- 요양원, 숙련 간호 시설, 성인 돌봄 시설의 직원 및 거주자
- 만 60세 이상의 뉴욕 거주자[2]

- 긴급상황 대처자 또는 긴급상황 대처자 기관의 지원 직원
    - 소방
        - 주 소방 서비스(소방관 및 조사관 포함)(전문 및 자원봉사)
        - 지역 소방 서비스(소방관 및 조사관 포함)(전문 및 자원봉사)
    - 경찰 및 조사관
        - 주 경찰
        - 주립 공원 경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DEC) 경찰, 산림 경비대
        - 뉴욕 주립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SUNY) 경찰
        - 보안관 사무소
        - 카운티 경찰서 및 경찰 관할 지구
        - 시, 타운 및 빌리지 경찰서
        - 대중교통 또는 기타 공공기관 경찰서
        - 차량관리부(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주 교정위원회(State Commission of Correction, SCOC), 사법 센터,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DFS), 감찰관(Inspector General, IG), 세금, 아동 및 가족 서비스국(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ices, OCFS), 주류관리청(State Liquor Authority, SLA) 등 주 현장 조사
    - 공공 안전 커뮤니케이션

[2] 약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만 백신을 접종합니다.

        - 비상 커뮤니케이션 및 공공 안전 응답 기지(Public safety answering point, PSAP) 인력(운행 관리원 및 기술자 포함)
    - 기타 선출 및 민간 인력
        - 법원 공무원
        - 기타 경찰 또는 보안관
        - 상기 일체의 서비스,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지원 또는 민간인 직원
- 교정직
    - 교정 및 가석방 공무원을 포함한 주 교정 및 지역사회 감독부(Department of Corrections and Community Supervision, DOCCS) 직원
    - 교도관을 포함한 지방 교도소 및 교정 시설
    - 보호 관찰 공무원을 포함한 지역 보호 관찰부
    - 주 청소년 구금 및 재활 시설
    - 지방 청소년 구금 및 재활 시설
- P-12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 헤드 스타트 및 얼리 헤드 스타트 포함)[3]
    - P-12 학교(공립 및 사립) 또는 교육구 교직원 또는 직원(모든 교사, 대체 교사, 교생, 학교 행정책임자, 교사 보조 직원 및 버스 운전사를 포함한 지원 직원 포함)
    - 계약직 버스 운전사 등 P-12 학교(공립 및 사립) 또는 교육구에서 근무하는 계약자
    - 센터 기반 또는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 뉴욕주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했거나 승인을 받았거나 법적 면제를 받은 전후 단체 보육 시설
- 대중과 접촉하는 대학 교원 또는 필수 대면 직원
- 센터 중심 또는 가족 돌봄 서비스 제공자 등 뉴욕주 면허를 보유하거나 등록했거나 승인을 받았거나 법적 면제를 받은 단체 보육 시설의 직원 또는 보조[4]
- 대중교통
    - 항공사 및 공항 고용인
    - 여객 철도 고용인
    - 지하철 및 대중 교통 직원(즉, 메트로폴리탄 교통청(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 롱아일랜드 철도(Long Island Rail Road, LIRR), 메트로 노스, 뉴욕시 교통, 업스테이트 교통)
    - 페리 고용인
    - 항만청 고용인
    - 공공 버스 고용인
- 편의점, 주류점, 지역 푸드 뱅크, 식료품 저장실, 허용된 가정 배달 식사 프로그램 등 공공 대면 식료품 상점 근로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동반 및 기저 질환이 있는 수감자.
- 수면, 입욕 또는 식사 숙박시설을 자신의 가구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개인.
- 수면, 입욕 또는 식사 숙박 시설을 같은 가구의 일부가 아닌 개인 및 가족과 공유해야 하는 노숙자 쉼터에서, 쉼터 주민과 상호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근무하는 개인(유급 또는 무급).
- 허가된 급식소와 집합 식사 프로그램의 근로자를 포함한 식당 근로자,
- 식당 배달 근로자
- 대중을 대면하는 호텔 근로자, 또한

[3]**약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만 백신을 접종합니다.**
[4]**약국은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에게만 백신을 접종합니다.**

- 택시, 리버리(livery), 블랙 카(black car), 운송 네트워크 회사 드라이버 등 임대 차량 운전사